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가격 인상 금지 근거 마련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52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업기계 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 마련 의무 규정 (안 제3조제2항 신설)	3
2. 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가격 인상 금지 및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근거 마련 등(안 제3조제3항, 안 제6조 및 제18조 신설 등)	8
3. 농업기계 시장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마련 (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등)	1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9. 22.

다. 회 부 일 : 2025.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업기계 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 마련 의무 규정 (안 제3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지난해에만 8만 5천 명이 감소한 200만 4,000여명으로, 200만명 선이 붕괴 직전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농업의 인력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벼농사는 경운·정지부터 이앙·방제·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가 정착되어 99%의 높은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67% 수준에 불과함.

【 최근 5년간('20~'24) 밭농업기계화율 현황 】

연도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20	99.6	12.2	73.0	93.2	31.6	61.9
'22	99.8	12.6	76.9	94.8	32.4	63.3
'24	100	18.2	77.7	96.2	42.9	67.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기계화율은 2년 주기로 짝수해에 조사하고 있음

* 작물별 재배 면적을 고려한 가중 평균값임

특히,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18.2%) 및 수확 (42.9%) 단계의 기계화율은 매우 저조하며, 배추·고추의 파종·정식 및 수확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2024년도 작물별·작업공정별 밭농업기계화율 현황 】

작물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무	100	8.3	93.1	99.0	5.7	61.2
배추	100	0.0	84.4	96.5	0.0	56.2
마늘	99.9	17.6	57.0	96.2	59.7	66.1
양파	100	22.7	91.2	99.1	31.4	68.9
고추	99.9	0.3	55.2	89.1	0.0	48.9
고구마	100	2.6	89.2	98.0	79.6	73.9
감자	99.9	6.8	91.4	98.2	84.7	76.2
콩	99.9	42.3	76.4	96.3	62.6	75.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통계명 :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4호)

* 조사주기 및 방법 : 격년(짝수 해), 현지면접조사

따라서, 이러한 낮은 밭농업 기계화율은 농촌의 고령화¹⁾에 따른 인력난과 생산비 상승 등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촌의 고령화 및 여전히 낮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3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① 기술개발 대책과, ② 자금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① 기술개발 대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기술개발 대책 마련”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또한,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유사 입법례: 기술개발 대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u>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반면에, ② 자금지원 대책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4조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구입비나 부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자금 지원”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음.

또한, 유사 입법례에서 “자금(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임의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음.

【 관련 유사 입법례: 자금(비용) 지원 관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u>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u>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u>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u>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시행일: 2026. 1. 23.]

이는 자금지원 대책 마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재정주체인 국민일반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안 제3조제2항을 유사 입법례처럼 ① 기술개발 대책과, ② 자금지원 대책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 대책의 경우 의무사항인 “강행규정”으로, 자금지원 대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가격 인상 금지 및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안 제3조제3항, 안 제6조 및 제18조 신설 등)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 -----.
<신설>	③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6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자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2. 자금 지원에 따라 실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의 범위

현행	개정안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 ~ 4. (생략)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 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이상으로 상승한 경우</u> 3. <u>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당행위로 인정한 경우</u> ② <u>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제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15조(청문) ----- -----. 1. <u>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6조의2(이의신청)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 1. <u>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u> 2. <u>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u> 3. <u>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u> 제18조(과징금)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인이 농업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운영중에 있음.

【 지자체별 농업기계 보조사업 현황 】

□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 예산, 지원 기종, 보조율, 보조금 상한 등 운영 방식의 차이가 큼

- (전북) 시·군비 개별 사업(정읍-농업기계지원사업, 고창-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김제-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등), 지원기종, 보조율(30~60%) 차등, 대다수는 50%
- (경북) 도비(15%) 포함된 도 공통 지침 사업, 1천만원 이하 50%(최대 500만원 보조), 1~3천만원 이하 기본+30%(최대 1,100만원 보조)
- (충남) 시·군비 개별 사업(서천-식량작물생산비절감지원사업, 예산-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논산-고효율 농업기계 공급 지원계획 등), 지원기종, 보조율(30~60%) 차등, 대다수는 50%(보령 30%, 청양 60%)

지역	예산(백만원)	지원 기종	보조율	보조금상한(만원)
정읍	1,700	25종+ 소형농업기계	수도작 30% 전작 50% 소형 60%	기종별 단가 설정 콤바인 최대 1,200
고창	550	중소형농업기계	50%	250
김제	500	소형농업기계	100~300만 40~50%	120
안동	1,384	3천만원 이하 중소형농업기계	1천만원 이하 50% 1~3천만원 이하 기본+30%	1,100
상주	1,114			
예천	983			
청양	459	건조기 등 7종	60%	상한없음
예산	300	소형농업기계 8종	50%	기종별 단가 설정 시비기 최대 275
아산	300	소형농업기계	50%	15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기계 구입자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판매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책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을 악용하는 일부 판매업자들의 ‘이중가격’ 책정 행태는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적 혜택을 판매업자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결과를 낳고, 동 보조금 사업의 정책 효과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농업기계 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1항은 ①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② 자금 지원에 따라 실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으로 인한 농업기계 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이는 보조금이 농업기계 생산업자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착되고 정책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러한 가격통제는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설사 ‘이중가격’이라는 부당행위 근절 및 농업인 보호라는 개정안의 공익적 입법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및 경제적 자유권의 본질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농업기계 가격의 상승이 부당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일정 상승률 이상의 가격 인상을 모두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제 체계에 대한 중복입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2)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³⁾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제35조⁴⁾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2조⁵⁾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⁶⁾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제재조치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5)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6)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⁷⁾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즉, 담합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3조⁸⁾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시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24조⁹⁾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이미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나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형사처벌¹⁰⁾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제재 조항을 추가할 경우 불필요한 입법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사업자의 부당행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허위로 보조금 받아 비싼 트랙터 구매...이장·판매업자 벌금형(YTN, 2024.06.22.)

위에 대한 제재 기준 및 주체(지자체, 공정위), 절차(의견진술, 이의신청), 수단(보조금 환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과징금, 형벌)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내우외환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최고가격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농기계 가격상승률의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상황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¹⁾).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은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① 정상적인 영업 활동 및 합리적인 가격 조정 위축, ② 수익성 악화로 농업기계 공급감소 및 시장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 ③ 장기적인 품질 저하 관련 기술 혁신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담합 금지와 제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공정위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하나의 담합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등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1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 유통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가격표시제의 취지에 따라 판매점 별 판매 가격이 상이한 구조하에서, 합리적인 원가 상승분 반영에도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농기계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의견 제출
(한국농기계유통조합) 농기계 판매가격이 상이한 경우는 다양하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증명 및 가격 상승률 제한 등은 시장의 가격 결정력 저해 및 농기계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반대 의견 제출

3. 농업기계 시장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마련(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는 한편, 이를 자금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생략)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조사를-----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조사의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과거의 데이터나 농가 수요 추정치에 기반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농업기계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조금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시장의 실제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과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농업기계 이중가격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식품부에 농업기계 유통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여 이중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문제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업기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농식품부는 농업기계는 제도적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비해서도 기종 및 모델이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할인기간,

재고, 단종, 옵션 및 판매점의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가격 변동이 심해 특정 시점의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농업기계 자금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실 수요 파악이 아닌 전국 농업기계 판매가격 및 수량의 전수 조사는 조사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인력대비 자금지원 규모 산정이라는 목적 달성과의 연관성이 낮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6